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국토정보 전문기관”

# 감사심의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직원 간 시비 건 특정감사]

2016. 9. 21.

 감사실  
한국국토정보공사

# 감사심의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I

### 심의 현황

#### □ 심의 대상

- 복무규정위반(음주 후 직원 간 시비 건)

\*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3급 지사장 김○○

#### □ 심의 개요

- 심의일시: 2016. 9. 21.(수) 10:30 ~ 11:30

- 참석자: 총 10명

\* 감사실장, 경영지원실장, 사내변호사, 노무사, 감사실직원

- 장소: 본사 감사실

#### □ 심의 내용

- 관련자에 대한 징계양정

## 2

### 심의 내용(회의록)

(위원장)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양정을 정하고자 감사심의조정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징계규칙의 양정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바랍니다.

(간사) 관련자에 대한 조사내용 설명 및 구체적인 양정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표상 본 건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지,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지 잘 판단하여야 함.

(위원) 술병을 들고 때리는 행위와 술병을 던진 행위 모두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것으로 보임.

(위원) 가해자가 만취상태에서 술병을 들고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손목인대를 다쳤으며, 우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것은 비위의 정도는 경한 반면에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위원) 저 또한 만취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본 건은 피해자의 생각이 중요한 것으로 피해자의 생각을 감안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위원) 가해자가 본인의 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며, 지사장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징계(감봉 3월)처분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도한 음주로 직원을 폭행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케 한 직원에게 「복무규정」 제2조(주수사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감봉 3월)로 처분 결정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일동) 예. 동의합니다.

### 3

## 심의 결과

□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3급 김○○(심의의결: 감봉 3월)

- 국토정보직 3급 김○○은 ○○지역본부 □□지사 총괄 책임자로서 지사 운영관리 및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여 명량하고 화목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동료 간의 융화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과도한 음주로 직원을 폭행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인사규정」 제50조(징계사유) 제4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징계규칙」 제8조(징계의 양정) 관련 <별표1>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1-마: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함.

### 4

## 위규자별 징계 현황

위 규 사 항	징계처분(안)	비 고
복무규정(품위유지의 의무)위반 -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3급 김○○	경징계 (감봉 3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징 계 요 구

제 목	복무규정(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징계 대상자	□□지사 국토정보직 3급 김○○
징 계 종 류	경징계(감봉 3월)
징 계 사유	

위 사람은 2016. 2. 26.부터 현재까지 ○○지역본부 □□지사에서 지사 운영 관리 및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사장으로 근무 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3호에 따르면 “임직원은 공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인식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 등 공직기강 특별 감찰에 따른 복무기강 확립 철저」(경영지원실-6561: 2016. 8. 29.)를 보면 “직원은 직무관련자 등과의 불필요한 식사, 유흥업소 출입을 금지하고, 성추행,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손상,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 공직 분위기 훼손 행위 등 복무관리에 각별히 유념하라.”고 지시 하였다.

따라서 공사 임직원은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인식하여 건전한 말과 행동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6. 8. 30.(화) 17:00부터 18:00까지 □□지사 사무실에서 ○○청 직원이 실시한 전달교육을 마친 후 ○○청 직원 2명과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각 2병을 마셨으며, 같은 날 21:00경 인근에 있는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맥주)을 마시던 중 소관청 직원으로부터 ‘술에 취한 지사장을 모시고가라’는 연락을 받은 국토정보직 6급 이○○(이하‘이○○’라 한다)가 국토정보직 7급(을) 추○○과 같이 동석하여 술을 권하였으나 술잔을 받지 않으며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며 ①이○○와 언쟁을 하던 중 일어서면서 술병으로 앉아있는 이○○를 때리려 하였고, 이를 손으로 막으려던 이○○의 왼쪽 손목인대를 다치게 하였다. 또한, ②○○청 직원과 함께 주점을 나가려는 이○○를 향해 술병을 던지는 등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50조 제4호1)의 규정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사장(인사처장)은 ○○지역본부 국토정보직 3급 지사장 김○○을 「인사규정」 제51조와 「징계규칙」 제8조에 따라 신분상 조치(경징계: 감봉 3월)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1)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